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53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인요한·성일종·구자근

박준대 · 조승환 · 최수진

우재준 · 김도읍 · 이종배

김민전 • 권영진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림가·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,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 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·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,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·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·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,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으로써,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독림가·임업후계자·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의 개발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독림가·임업후계자·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 에 관한 사항
- 2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「수목원 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목원·정원의 조 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1조(임업경영기반의 조성) ①	제21조(임업경영기반의 조성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독</u>	② <u>타</u>		
림가 · 임업후계자 · 산림조합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
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	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의 개		
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	<u>발</u>		
<u>발</u> ,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			
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			
행하여야 한다.			
<u><신 설></u>	1. 독림가·임업후계자·산림조		
	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		
	력 향상에 관한 사항		
<u><신 설></u>	2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		
	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		
	<u>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</u>		
	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		
	<u>목원·정원의 조성·운영에</u>		
	<u>관한 사항</u>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